

『입학 전 타교 대학원 취득 학점 인정』에 대한 교과과정 해설

개정: 2015. 6. 24.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 전 타교에서 취득한 석사·박사과정의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인정 교과목의 범위, 과정 간 인정학점과 절차의 구체화, 인정 학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교과과정 해설에 반영함

입학 전 타교 석사·박사과정 취득학점 인정(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1) 본교 석사·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타교 동일과정 동일·유사 전공의 석사·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성적이 B⁰ 이상이며 10년 이내에 이수한 동일·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석사·박사통합과정 15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입학 전 타교 석사·박사통합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본교 석사과정으로 입학할 경우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생 소속 학과(부) 장으로부터 본교의 전공 및 교과목과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학과(부) 관련 위원회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과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학생 소속 학과(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본교의 동일·유사 교과목 주관 학과(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점 인정을 승인받은 교과목은 본교의 동일·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입학 전 학점을 취득한 대학명을 표기하며, 성적은 평점 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제3항에 따라 학적부에 등재된 교과목과 동일한 강좌는 재수강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입학 전 타교 대학원 취득 학점 인정』 세부기준

□ 목적 및 개요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서울대학교 학칙」 제82조를 근거로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입학 전 타교 대학원 취득학점을 인정
- 이 기준은 위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해설」을 보완하는 지침으로서의 효력이 있음

□ 취득 사례별 학점 인정

입학 전 과정	본교 과정	인정 학점	비 고
석사과정	석사과정	6학점 이내	
	석사·박사통합과정	6학점 이내	
박사과정	박사과정	9학점 이내	
	석사·박사통합과정	9학점 이내	
석사·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	6학점 이내	
	석사·박사통합과정	15학점 이내	

※ 이 제도로 인정한 학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학점인정 범위(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에 포함한다.

□ 입학 전 이수 교과목 인정 범위

- 동일 학과·전공 여부 확인: 학과 및 전공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해당 학과(부)에서 학과·전공의 유사도를 확인하여 인정 가능
- 타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개설학과가 학생이 소속된 학과·전공이 아닐지라도 해당 학과·전공의 학문 범주에 포함되면 인정 가능
- ※ 타교 이수 교과목과 동일·유사한 교과목을 우리대학 입학 후 이미 이수한 경우, 타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타교 이수 교과목의 인정 시한

- 이수학기로부터 10년 이내
- 개별 교과목의 이수연도 및 학기를 기준으로 함

□ 학점 인정 절차



- 지도교수의 추천을 거친 신청사항은 반드시 소속 학과(부)의 학사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과(부)장으로부터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학과(부) 관련 위원회 심의와 소속 대학(원)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단과대학(원) 심의 후 학점 인정 신청서, 입학 전 소속 대학 국·영문 성적증명서, 교과목 개요, 학과(부) 및 단과대학(원) 심의결과 등을 갖추어 학사과에 승인 요청
 - ※ 외국 대학의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타교 교과목의 관리

- 타교 이수 교과목은 본교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전산관리
 - ※ 본교 교과목의 학점이 타교 취득 학점보다 높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 불가함
- <예시>

입학 전 타교	본교	인정 여부
생물학 3학점	생물학 2학점	2학점으로 인정
생물학 2학점	생물학 3학점	인정 불가

□ 학사지도

-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명칭이나 내용이 동일·유사한 본교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조치
- 학과(부)에서는 학생에게 학점 인정 통보 시 동일·유사 교과목 수강금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
- 학점 인정을 승인받은 교과목은 본교 교과목과 동일과목으로 대체되도록 전산관리를 통해 재수강을 사전에 차단

□ 경과조치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본 기준을 일괄 적용
- 다만, 기존 단과대학(원) 및 학과(부)의 입학 전 타교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에 대한 자체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이미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 등의 조치 없음